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68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1년 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, 지방공기업·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
나. 사무명 :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

다. 추진근거

- 관련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, 임직원교육, 경영지도·컨설팅, 정책 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
- 지방공기업(광역+기초)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
- 지방공기업·출연기관 컨설팅 지원
- 지방공기업 설립·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(법정전담기관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(법정전담기관)
-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채용대행 사업
-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

바. 출연대상 기관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, 12-6

- 법인설립 : 1992. 3. 2.
 - ※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(2016. 6)
- 조 직 : 1단 4실 2센터 / 정원 62명 ※현원 56명
 - 이사회 구성 : 이사 11명, 감사 1명 *서울시 기획조정실장(당연직이사)
- 시설현황 : 건물(지상6층) 연면적 2,550㎡, 부지 640㎡
- 위 치 도



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7천 8백만원
- 산출근거 : 경상운영비(기본급) 5천만원,
 시·도등 지원사업비 2천 8백만원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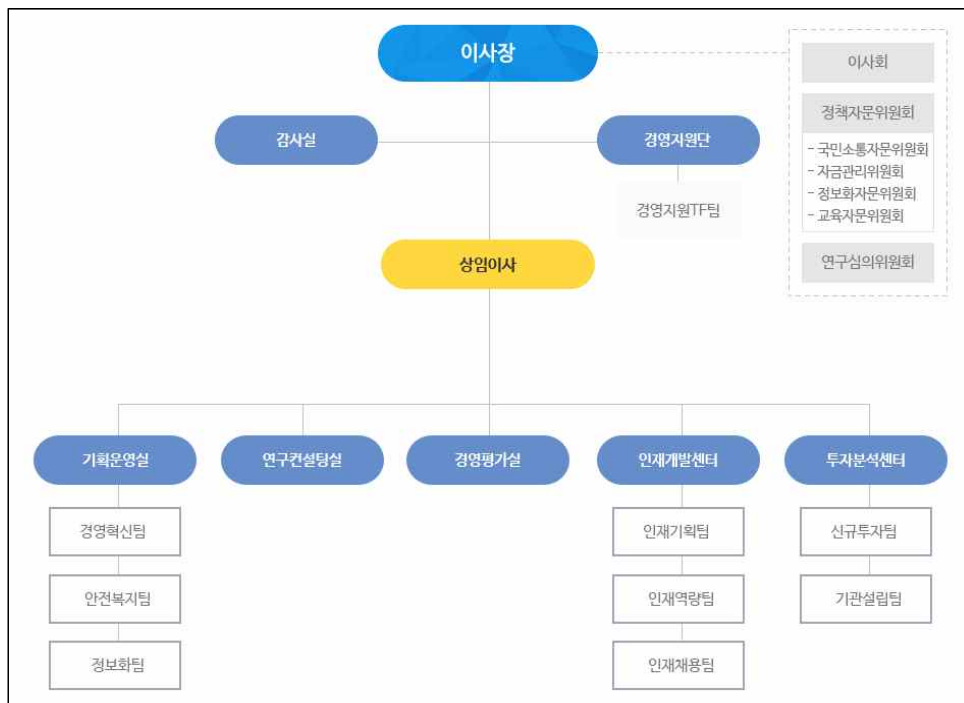
나.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 근거

- 「민법」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출범(지방자치경영협회, 1992년)한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 (이하 “평가원”)은 2016년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¹⁾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컨설팅, 정책연구, 교육연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 되었음(제78조의4)¹⁾.
- 현재 조직은 1단 4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, 임원 12명(이사장, 상임이사, 비상임감사 1명, 비상임이사 9명), 직원 56명(정원 62명), 전문연구인력 380명(상근연구인력, 자문위원, 경영평가단 등), 정원 외 상근자 14명 등이 근무하고 있음.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평가원 정관²⁾에 따라,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·도 기획조정실장 중 5명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며, 서울시는 순서에 따라 2027~2028년 비상임이사를 맡을 예정임.

<지방공기업 조직도>



- 서울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타 시·도와 지방공기업(370개 기관)과 함께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음.

2) 제18조(임원의 선임) ③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위촉직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, 당연직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.

1.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
2. 특별시,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·도의 기획조정(관리)실장 4~5인(윤번제로 선임)

다.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정성 검토

- 평가원의 2022년도 수입예산 163억 1천만원(추정치)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·공단 출연금은 43억 8천만원(26.8%)이며, 자체 사업 수입은 115억 3천만원(71%), 임대료 수입 등은 4천만원(0.2%)임.
- 전체 출연금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원 1천만원, 나머지 33억 7천만원을 지방공사·공단이 부담³⁾할 예정임.
- 광역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시·도 재정력지수(50%)와 공기업수(50%)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, 서울시는 재정력지수 1.069(4구간, 4천 2백만원), 공기업수 32개(3구간, 3천 6백만원)에 해당돼 2016년부터 계속해서 7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.

<시·도별 출연금 산정기준>

구간	재정력 지수	구간금액 (백만원)	구간	공기업수	구간금액 (백만원)
0.5 (2구간-40%)	세종, 제주	18	0.5 (2구간-40%)	세종, 제주	18
1 (2구간-40%)	0.5이하 ~	24	1 (2구간-40%)	1~15	24
2 (기준구간)	0.5~0.7이하	30	2 (기준구간)	16~25	30
3 (2구간+20%)	0.7~0.9이하	36	3 (2구간+20%)	26~35	36
4 (2구간+40%)	0.9초과 ~	42	4 (2구간+40%)	36~	42

3) 201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매출액(50%), 직원수(30%), 자산(20%)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,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6억 1천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임.

<주요 시도별 출연금 배분금액>

(단위: 백만원)

시·도별	출연금액			재정력 지수			공기업수		
	202	2022 (A+B)	차액	지수	구간	금액 (A)	수	구간	금액 (B)
서울특별시	78	78	-	1.069	4	42	32	3	36
경기도	84	84	-	1.032	4	42	97	4	42
인천광역시	60	60	-	0.786	3	36	15	1	24
부산광역시	60	60	-	0.750	3	36	9	1	24

-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, 임직원 전문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(35명)의 인건비 5천만원과 시·도 등 지원사업비 (정책연구, 컨설팅, 발전사업) 2천 8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임.

<서울시 출연금 세부내역>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세부산출 내역
계	78,000	
경상운영비	50,000	
인건비	50,000	
기본급	50,000	• 1,000,000천원 × 5% (전문직 35명) 지방공기업·출연기관의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, 경영평가, 컨설팅 지원,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(35명) 인건비
시도등지원사업비	28,000	
정책연구	8,000	• 외부전문가 보상비, 인쇄비, 회의비, 포럼 등
컨설팅	8,000	• 외부전문가 보상비, 인쇄비, 회의비 등
발전사업	12,000	• CEO 및 신규입사자, 온라인 등 무료교육

-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,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, 투자·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,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음.

<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서울시 출연금과 주요사업>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출연금 규모	시도 출연내역	서울시 출연내역	주요사업 및 추진실적
2019	4,217	1,020	7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공기업 경영평가(서울시) : 상수도, 서울교통공사, 시설공단, 농수산식품공사, 주택도시공사, 에너지공사, 자치구(시설공단) · 정책연구 : 총 35개 과제 수행(지방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등) · 컨설팅(서울시) : 23개 기관, 25건(양천구, 강서구, 등) · 역량강화 전문교육(서울시 무료교육)13개 과정 654명
2020	4,279	1,014	7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공기업 경영평가(서울시) 하수도본부, 교통공사, 시설공단, 농수산식품공사, 주택도시공사, 에너지공사, 자치구(시설공단) · 정책연구 : 총 32개 과제 수행(지방공기업의 공유가치 창출방안 등) · 컨설팅(서울시) : 9개 기관, 9건(동작구, 강북구 등) · 역량강화 전문교육(서울시 무료교육)13개 과정 475명
2021 상반기	4,367	1,014	7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공기업 경영평가(서울시) : 상수도, 서울교통공사, 시설공단, 농수산식품공사, 주택도시공사, 에너지공사, 자치구(시설공단) · 정책연구 : 총 12개 과제 수행(올해 28개 과제 수행 예정) · 컨설팅(서울시) : 3개 기관, 3건(송파구, 성북구 등) · 역량강화 전문교육(서울시 무료교육)4개 과정 189명

- 이처럼 평가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에 대한 정책연구나 법·제도 자문,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17개 시·도 모두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는 등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지방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서울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임.

[참고자료] 관련 법규

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「지방공기업법」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⑥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.

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,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: 재정력, 공기업 수 등
2.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: 매출액, 직원 수, 자산 등

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,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
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·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